

제100조(양벌규정)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10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공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을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시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은행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제한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할 수 있는 영업주체의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경력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